KOTRA자료 25-007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법인설립가이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법인설립가이드

본 책자는 외국인의 국내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KOTRA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법률용어의 엄격한 사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1. 현지법인 ····· 05
2. 개인사업자 ····· 05
3. 지 점 ····· 07
4. 연락사무소 ····· 08

현지법인설립절차(외국인투자촉진법)

1. 현지법인설립 흐름도 ····· 09
2. 외국인투자신고 ····· 10
3.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 10
4. 주식회사설립의 등기 ····· 11
5. 사업자등록 ····· 11
6.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11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12

주식회사설립등기절차

1. 주식회사 설립 유형 ····· 13
2. 주식회사 설립 절차 ····· 14
3. 주식회사 설립등기 ····· 15
4. 창업절차 간소화 및 소규모회사의 특례 ····· 25

IV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28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 29

V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1. 등록절차 흐름도 ····· 30
2. 외국인투자신고 ····· 30
3. 투자자금 송금 ····· 31
4. 사업자등록 ····· 31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32

VI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절차

1. 국내지사 설치 흐름도 ····· 33
2. 지사의 구분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 33
3. 설치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 34
4. 지점설치의 등기 ····· 35
5.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외국환거래규정 제 9-37조) ····· 37

[별첨] 법인설립 및 등기에 필요한 양식 견본 39

I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이미 설립된 법인에 출자, 둘째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 셋째는 외국환거래법 절차에 의한 지점설치, 넷째는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함

1 • 현지법인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출자를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설립된 법인에 출자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법인 설립 또는 출자를 통한 투자라 하더라도 1억원 미만 투자 또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미만 취득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즉 법인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투자의 경우에도 1억원 이상인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현지법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이 적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됩니다.

사증과 관련하여, 3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 무역경영(D-9)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1억원 이상 투자하여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외국인이 1억원 이상 투자하고 기업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시에는 기업투자(D-8-3)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주식회사)
일반적 특징		1. 기업이윤의 기업주 독점 2. 기업설립이 용이 3. 의사결정의 신속 4. 기업주의 무한 책임 5. 자본조달 능력의 한계	1. 자본조달 및 형성이 용이 2. 설립절차가 복잡 3.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음 4. 투자자본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 5.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적정규모		소규모	중·대규모
법원등기여부		등기를 요하지 않음	등기를 요함
법적출자인원		대표자	발기인 1인 이상
적용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자금액 1억원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취득 시 적용	
	외국환거래법	출자금액 1억원 미만 또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미만 취득 시 적용	

3 • 지 점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 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점은 법적으로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차이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결산이 독립적)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회계·결산이 동일체)
신고수리, 허가기관	KOTRA, KOTRA 해외 투자 거점 무역관, 외국환은행 본·지점(이상 신고기관)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재부 등(금융업 등의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 건당 1억원 최대 :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법인세율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 2억 이하 : 9% • 200억 이하 : 19% • 200억 초과 : 2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2억 이하 : 10% • 200억 이하 : 20% • 200억 초과 : 22% * 지점세 납부의무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4 •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점과 달리 본사의 비영업적 활동(시장조사, 업무연락 등)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 번호증만 부여받게 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II 현지법인설립절차(외국인투자촉진법)

- 현지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 ❶ 외국인투자 신고절차
  - ❷ 회사설립 등기절차(개인사업자 등록절차)
  - ❸ 사업자 등록절차(설립회사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 ❹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
- 외국인의 경우 회사설립등기 전 외국인투자신고 및 회사설립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1 • 현지법인설립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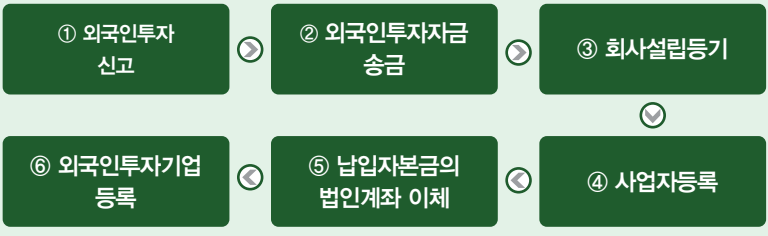

2 · 외국인투자신고

(1) 신고인 : 외국투자가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투자가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첨부

(2) 신고장소 : KOTRA, KOTRA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외국인투자신고 및 사후관리권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3) 제출서류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별첨 참조)
- 외국 개인투자가의 국적증명서(여권사본)
- 외국 법인투자가인 경우 법인증명서(외국 행정기관, 즉 상무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4) 처리기간 : 즉시

3 ·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1) 송금방법 : 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 휴대반입(hand carry)할 경우, 소지한 외화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송금계좌

- 비거주자 외화계정(대외계정)을 개설하여 송금하거나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합니다.
- 임시번호 사용 시,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투자자금 송금전표 작성 예시

수취은행명 : ○○은행 △△지점

송금인명 : 투자가명

수 취 인 : 신설 또는 합작예정 회사명

자금용도 : ○○회사 설립 또는 투자자금이라고 명시

(3) 송금 후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

(4) 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며, 회사설립등기 시 필요한 첨부서류

※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신주인수증 등의 공증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 주식회사설립의 등기

• 주식회사설립 등기절차에서 상세히 설명

5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에서 상세히 설명

6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회사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인격을 갖게 되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하게 됩니다.

※ 납입자본금의 신설계좌 이체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 등록증사본, 통장에 사용할 도장(개인/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각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 등록장소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2)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대부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록신청

(3)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별첨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사본 1부
- 주주명부 1통

(4)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즉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 다음의 용도에 필요

-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과 이사회결의서(배당내용 포함), 공인회계사 감사 필한 재무제표 등이 있으면 투자과실을 송금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해외송금절차에 비해 모든 절차가 매우 간편해집니다.

- 투자가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

※ 투자가 비자(사증) 신청

① 신청장소 : KOTRA 종합상담실,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재외공관

- KOTRA 종합상담실 :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 관할 출입국관리소 : 기업투자(D–8)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 재외공관 : 기업투자(D–8) 비자신청

②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등

III 주식회사설립등기절차

-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 5가지이나, 주식회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 회사설립 등기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 주식회사 설립 유형

(1) 모집설립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법

(2) 발기설립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2 • 주식회사 설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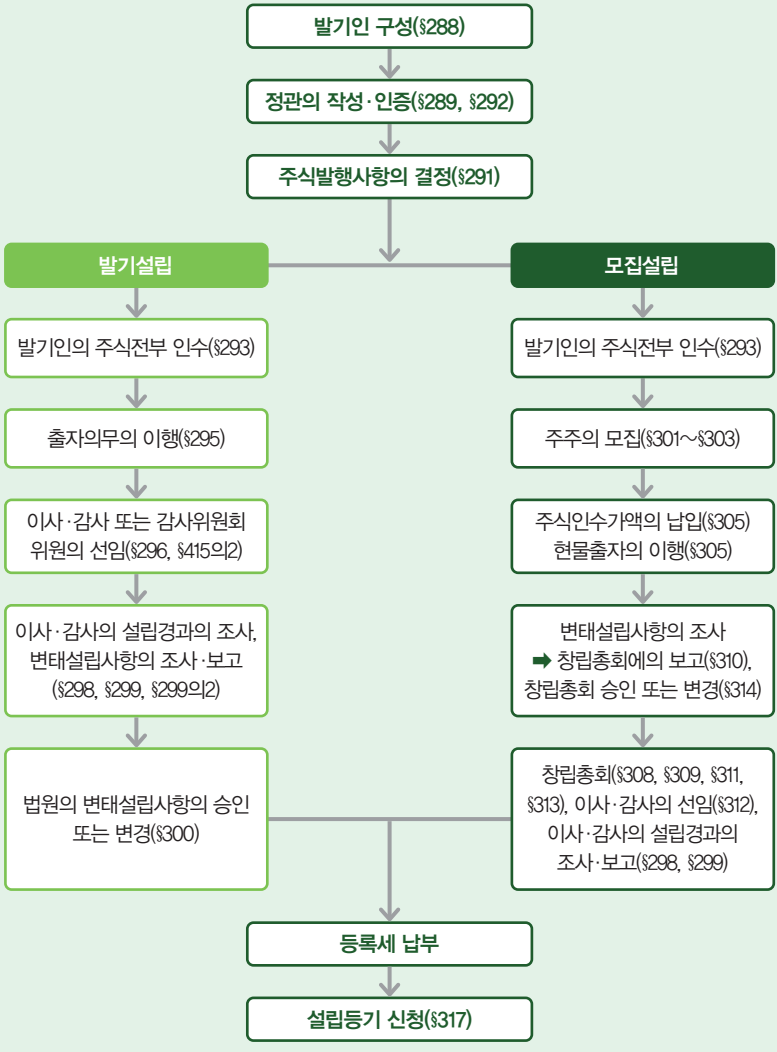
발기인 구성(§288)
정관의 작성·인증(§289, §29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291)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의 주식전부 인수(§293)
출자의무의 이행(§295)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296, §415의2)
이사·감사의 설립경과의 조사,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보고 (§298, §299, §299의2)
법원의 변태설립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300)
발기인의 주식전부 인수(§293)
주주의 모집(§301~§303)
주식인수가액의 납입(§305) 현물출자의 이행(§30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 창립총회에의 보고(§310), 창립총회 승인 또는 변경(§314)
창립총회(§308, §309, §311, §313), 이사·감사의 선임(§312), 이사·감사의 설립경과의 조사·보고(§298, §299)
등록세 납부
설립등기 신청(§317)

3 • 주식회사 설립등기

가. 등기기간

(1) 모집설립 :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2) 발기설립 :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나. 등기전 주요 결정사항

(1) 발기인 구성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합니다.
- 발기인이란 정관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람을 가리키며(상법 제289조), 외국인이나 한국 내 비거주자라도 발기인이 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1주 이상)해야 하며, 따라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2) 동일상호의 사전확인

- 법인 설립 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의 동일한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대법원 웹사이트(www.iros.go.kr) "법인상호찾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목적, 1주의금액, 임원등의 결정

- 법인설립의 기초사항인 본점소재지, 1주의금액, 공고방법, 사업목적, 임원의 구성내용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1) 등기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신청인 준비서류

연번	내용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회 의사록(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7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8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잔액증명서로 대체 가능)
9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0	취임승낙서(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외국인의 경우 서명 후 공증
11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및 주소증명서면 공증
12	인감신고서
13	번역문(첨부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4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5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1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7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

※ 각 서류에 대한 견본은 별첨 참조

법원 등기서류 안내 시 유의사항

-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등기예규 제1534호)
  -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외국공문서의 진정성 확인

예규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	
시행 전	등기관의 재량	
시행 후	협약 비가입국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 확인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외국공문서 심사 관련 문의: 법원행정처 공탁법인 심의담당처 (Tel. 02-3480-1879)

〈참고〉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가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 또는 대만 투자가인 경우는 한국의 법인, 개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 외국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와 공증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를 발급받거나 영사확인(미협약국인 경우)을 받습니다.

외국인(법인포함) 투자가의 준비서류

취임승낙서	• 임원으로 등재되는 전원 준비 –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일본,대만) : 취임승낙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그 외 국가 : ① 취임승낙서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국내·본국)의 인증을 받아 첨부 ②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을 받거나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
국적, 성명,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정보	• 여권 또는 본국관공서 발급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포함) : 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첨부
대표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발급기관이 있는 국가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 발급기관이 없는 국가 (미국, 영국 등) :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또는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을 본국 또는 국내에서 공증
위임장	• 등기신청 위임장 : 위임장에 회사의 대표자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법인 인감을 날인함. •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공증시 공증신청에 필요한 위임장(본국 공증) 필요
인감신고서	• 인감신고서에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 서면을 첨부 •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신고서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제출.
법인 증명서	• 외국 법인투자가인 경우 법인증명서(외국 행정기관, 즉 상무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Tips(개인 및 법인투자가 공통 사항)

- **정관**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미만)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는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인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음.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인수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 신청시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식인수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상호,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의 금액, 인수가액, 주금납입기관, 발기인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고 있음.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정관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그 수와 금액,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관하여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기인회의사록**

주금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회의를 열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발기인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가.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사는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나 사내이사는 반드시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의사록 공증

발기인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공증인법 66의2①단서).

소규모 회사의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권한을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행사함.(상법 제383조 제4항, 제5항, 제6항)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없이 그 인수가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발기인 또는 이사는 납입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취임승낙서**

이사, 대표이사, 감사는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므로, 취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법이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함.

이사 등이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감을 취임승낙서에 날인하고 그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거나, 취임승낙서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취임하는 자가 기명날인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는 위의 공증인에는 우리나라 공증인뿐만 아니라 외국 공증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임승낙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규칙 104조 2항) 다만, 그 외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국 또는 체류국의 공증인이 공증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 **주소증명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나,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미국, 영국 등)에는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의 원본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하는 방법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출을 갈음 할 수 있음(예규 1686호)

-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법인의 대표자 등)은 미리(설립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제출을 위한 인감신고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① 인감신고서에 인감제출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국내, 본국의 공증인을 불문한다)의 인증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

②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은 인감신고서에 본국 관공서에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③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은 인감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아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위임장**

등기신청권자 이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위임장은 그 형식이 문제되지 않지만,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등기사항, 위임자·수임자의 표시, 위임의 취지 및 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위임하는 등기사항을 표시함에 있어서 어느 등기사항의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발부 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설립등기 시에는 당해 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지정되어 있는 권역을 의미합니다.

- **번역문**

등기신청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규칙 52조 5항),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됨. 다만,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번역문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음.

-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와 각각의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제출하여야 함(예규 979호 1).

라. 주식회사 설립비용

- 주식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지방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회사설립비용 예시

지방등록세 : 자본금의 1,000분의 4이며,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는 경우 3배 중과됨	1,200,000원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24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
법인인감도장 제작	약 30,000원
공증 시 (정관 등 등기 제출서류 일부)	약 200,000원
합 계	**약 1,700,000원**

*자본금 1억원으로 서울시내 설립 가정 (수임료 별도)

4 • 창업절차 간소화 및 소규모회사의 특례

• 2009년 05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소규모회사(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발기설립시 정관에 대한 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며,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정보기술(IT)화를 실현하는 등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가. 주요 내용

(1)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 면제(상법 제292조)

-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시에 첨부하는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정관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 이와 같이 공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소규모 회사의 신속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투자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상법 제363조)

- 가족기업처럼 운영되는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복잡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10일 전으로 단축하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도 허용합니다.
- 이와 같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상법 제368조의4 신설)

- 정보통신 환경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졌으나,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합니다.
- 이와 같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 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상법 제4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현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만 하므로 창업 시 드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합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직접 감독·감시하도록 하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 이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핵심 참고사항

(1) 유사상호등기 규제 폐지

- 종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었으나,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개정

(2)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

- 종전 자본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최저자본금제 폐지

※ 단, 외국인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최저자본금은 한화 1억원 이상

(3)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의 특례

- 정관 공증 면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준용됨)
- 의사록 공증 면제 (공증인법 제66조의2)
-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체 가능

(4)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경우의 특례

-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 허용
- 이사의 수 3명 미만 가능
-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회제도 폐지
- 이사가 2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
- 1인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인 이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기능을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담당
-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시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경업금지·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신주의 발행결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결정, 준비금의 자본 전입, 중간배당의 경우 종전 이사가 2명인 경우에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결정
- 주주총회소집결정권한, 업무집행결정권(지배인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등의 경우 종전 이사가 2명인 경우에 이사회의 권한이었으나,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에게 권한 있음
- 감사 선임의무 면제
- 감사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함. 다만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함

Ⅳ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1 •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보통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한 장의 용지에 동시에 합니다.

(1) 신청장소

-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2) 기 한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부분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동시에 처리

(3)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별첨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정관 사본(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원본(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예를 들어, 은행업, 금융투자 관련업, 방위산업 등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상가임대차법에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4천만원 이하, 그외지역 :3억 7천만원 이하)

• 기 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외화매입 (예치) 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2 •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1)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합니다.

(2)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현물출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는

• 사업자등록신청서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회사 설립 후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V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1 • 등록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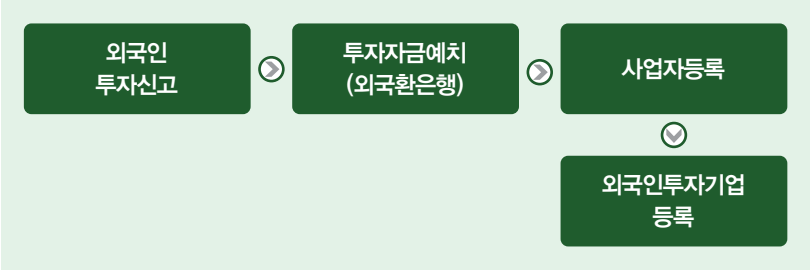

2 • 외국인투자신고

(1) 신고자

- 투자가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투자가의 서명이 있는(공증은 필요없음) 위임장이 필요

(2) 신고장소

- KOTRA, KOTRA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및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3) 신고방법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별첨) 제출

(4) 신고수리

- 즉시

3 • 투자자금 송금

- 국내 자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필요)

4 • 사업자등록

(1) 신청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서류 제출요망

(2) 신청장소 : 사업장 관할세무서

(3) 기 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4)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 기 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원본제시 후 사본제출(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5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 등록장소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또는 KOTRA

(2)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3)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사본
- 위임장(대리인을 통한 신청의 경우)

VI 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 설치절차

1 • 국내지사 설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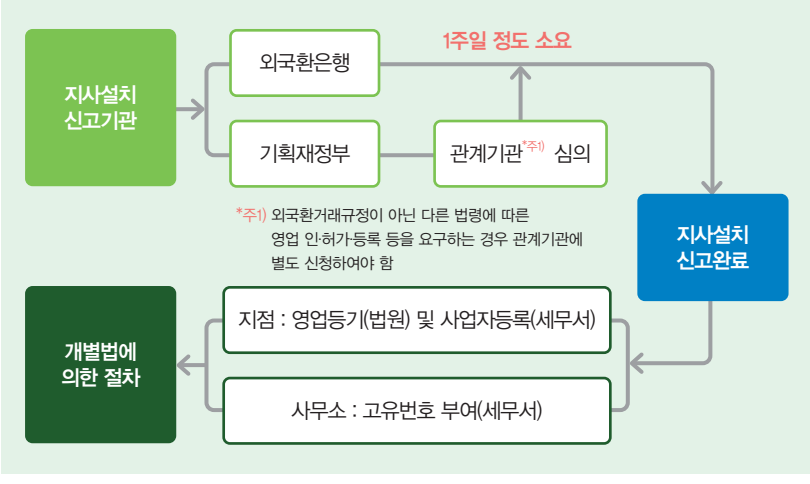

2 • 지사의 구분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가. 지점(branch office)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나. 사무소(liaison office)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해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사무소 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알선업 영위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3 • 설치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가. 원칙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기획재정부장관 앞 신고대상인 영위업무(지점 및 사무소 공통)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앞 신고 시 제출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규정서식 제9-8호) 2부 및 동 서식의 첨부서류*주2)

(2) 국내지사장 임명장

(3)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등(당해 국가에 설립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지 공증위임장(지사설치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5)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지침서식 제1-2호) 1부

(6) 국내지사장의 실명증표(예: 주민등록증, 여권 등)

*주1) 첨부서류:
①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③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라. 유의사항

- 국내지사 설치 신고 시 국내 지사장 실명번호에 의거 지정등록 후 지사를 설치한 다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을 제출하여 변경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등이 사본인 경우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4 • 지점설치의 등기

가. 상법상 개념

(1) 상법상으로는 지사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소라고만 규정하고(상법 제614조 – 제621조)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등기 실무상으로 외국환관리규정상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절차가 불필요하고 지점만이 등기절차가 필요합니다.

나. 등기절차

(1) 등기신청인 :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상업등기법 제23조 제3항)

(2) 등기기간 :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

➡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

(3) 등기사항(상법 제614조 제2,3항)

-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신청서 기재사항

• 회사의 상호 : 상호는 한글로 표시하고,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임을 표시
• 본 점 : 외국회사의 상호, 외국본사의 소재장소
• 영 업 소 :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소재 장소
• 등기의 목적 : 영업소 설치등기
• 등기의 사유 : 영업소의 설치
•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 회사의 설립연월일, 영업소를 설치한 뜻과 그 연월일
• 필요한 인(허)가서의 도달연월일
• 등록세액 등
• 신청연월일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해당 등기소 기재

(5) 첨부서류

•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회사설립사항증명서): 일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미국, 유럽 등 기타 외국의 경우 본국 관청인 상무부, 교부 등에서 발급한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위 각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

• 외국인주소사실증명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5 •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 (외국환거래규정 제 9-37조)

가. 폐쇄 신고

•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설치신고를 받은 자(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쇄 신고 시 제출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규정서식 제9–11호) 2부

(2) 폐쇄입증서류(본사 발행)

(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 기타 유의사항

– 본사 파산 등으로 "폐쇄입증서류"를 본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발행 "폐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국내지사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나. 청산대금 회수

•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 신고를 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산대금 회수 시 제출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사본

(2) 공인회계사감사필 청산보고서 등

(사무소의 경우에는 국내 보유자산의 처분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급)

(4) 영업기금도입액(국내지점에 한함),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명세표

(5) 예금잔액 증명서

(6) 청산종결등기부등본

(미등기 지사의 경우, 폐업증명서 등 청산종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 회수대금의 한도

- 회수대금의 한도 제한은 없으며, 지점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필한 청산보고서상의 청산잔여재산 범위내, 사무소의 경우 국내 보유자산의 처분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범위내 회수 가능합니다.

[별첨]
법인설립 및 등기에 필요한 양식 견본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 40
2. 정 관 ····· 43
3. 주식인수증 ····· 55
4. 주식청약서 ····· 56
5.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58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59
7.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 60
8. 창립사항보고서 ····· 61
9. 창립총회의사록 ····· 63
10. 이사회의사록 ····· 65
11. 조사보고서 ····· 66
12. 취임승낙서 ····· 67
13. 주주명부 ····· 68
14. 위임장 ····· 69
15. 법인설립 전 확인사항 ····· 70
16. 외국인투자신고서 ····· 71
17.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72
18.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73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①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설립			
② 등기의 사유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 면제)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20○○년 ○월 ○일 발기인회에서 상법 제298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③ 본/지점 신청구분	1. 본점신청 2. 지점신청 3. 본·지점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④ 상 호	○○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			
⑤ 본 점	서울특별시 ○○구 ○○로 ○○			
⑥ 공 고 방 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일보에 게재한다			
⑦ 1주의 금액	10,000원			
⑧ 발 행 할 주식의 총수	20,000주			
⑨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보통주식 3,000주 제1종우선주식 2,000주			
⑩ 자본금 총액	50,000,000원			

등 기 할 사 항	
⑪ 목 적	1. 주택건설업 1.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 토목공사업 1. 부동산 임대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⑫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 ○ ○ (–) 사내이사 ○ ○ ○ (–) 사외이사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감 사 ○ ○ ○ (–) ※ 외국인일 경우 : △△국인 ○ ○ ○ (년 월 일생)
⑬ 공 고 방 법	대표이사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⑭ 지 점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지점)
⑮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없음(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기재)
⑯ 기 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소재지 등)	없음(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기재)

⑰ 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세	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 수수료
			금 원 (자본금의 4/1000)	금 원 (등록세의 20/100)	금 원 (등록세+교육세)	금 원
합 계						
⑱ 과 세 표 준 액			금	자 본 금 액 수		원

⑲ 첨 부 서 면

1.정 관	통	1.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통
1.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통	1.검사인조사보고서등본	통
1.주식청약서	통	1.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	통
1.주식발행사항동의서	통	1.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창립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통	1.인감신고서	통
1.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통	1.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1.주금납입보관증명서	통	1.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1.재산인도증	통	1.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통
1.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통	〈기 타〉	
1.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통		

년 월 일

⑳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정 관[1)]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외식산업
2. 식품제조 및 가공업
3. 의료기기 중개업
4. 부가통신업,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 및 소매업
5. 소프트웨어 개발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3조(본점과 지점)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장 주식(株式)과 주권(株券)

제5조(발행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

*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은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제3항에 따라 100원 이상이어야 함.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시에 총 20,000주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1) 자세한 사항은 「상법」 제4장 주식회사(제288조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제9조(신주인수권)

① 신주(新株)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端株)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한 후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신주의 발행가격)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발행가격을 정한다. 이 경우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발행가격을 시가(時價)나 액면가액(額面價額) 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주식의 명의개서)

①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려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한 후 주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名義改書), 질권설정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주식의 양도 및 대항요건)

①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못한다.

제15조(주주 등의 성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登錄質權者, 법정대리인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에 통지를 받을 대리인과 그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주권의 재교부)

① 주권의 분할 또는 합병되거나 오손(汚損) 또는 훼손(毁損)되어 새로운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려면 주권재교부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喪失, 오손 또는 훼손이 심하여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받으려면 주권재교부청구서에 주권상실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매 사업연도의 말일의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나 배당을 받을 자 그 밖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2주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주식업무취급규칙) 주식, 주권의 업무처리 및 주권의 재교부수수료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 및 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사채(社債)

제19조(사채모집)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제20조(사채관리회사) 사채모집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채관리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21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일에 대하여는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사채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제22조(신주인수권부사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기산일은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제23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주식의 명의개서), 제15조(주주 등의 성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4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한다.

제25조(소집의 결정)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6조(소집의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상법」 제363조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고,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음.

제2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의장)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9조(질서유지)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그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 이사회

제33조(이사의 원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 「상법」 제383조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회사는 3명 이상,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음.

제3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집중투표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한다.

제36조(대표이사의 선임)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7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

①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과 감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사람과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감사

제45조(감사)

① 회사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8조(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한 후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계산

제50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4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 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이익잉여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별도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그 밖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3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數種)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상법」 제463조의3(중간배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⑤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이익배당의 소멸시효)

① 이익배당은 배당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배당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보칙

제55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담역이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56조(업무규정)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그 밖에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7조(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또는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의 경우에는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1항에 따라 모든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부터로 할 수 있음.

제2조(최초의 영업연도)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연월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발기인의 성명 등)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끝에 기재한 바와 같다.

* 이 정관은 주식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예시한 것이므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은 임의로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기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시 ○○구 ○○로 10

발기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시 ○○구 ○○로 10

발기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시 ○○구 ○○로 10

※ 외국인일 경우 : 발기인 △△국인 ○○○

(년 월 일생)

△△국 ◇◇◇ ×××× 123

주식인수증	
상 호	○○○ 주식회사
인수할 주식수	주
1주의 금액	금 원
총 액	금 원

본인은 ○○○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발기인 : ○○○

○○시 ○○구 ○○동 123-4

○○○ 주식회사 귀중

주 식 청 약 서	
상 호	○○○ 주식회사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주
1주의 금액	금 원
주금 총액	금 원

위 회사의 정관과 청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주식 인수를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주식청약인 ○○○

○○시 ○○구 ○○동 123

○○○ 주식회사 귀중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년 월 일
목 적	1. 2. 3. 4. 기타 각호 관련 부대사업

상　호	○○○ 주식회사
본점의 소재지	○○시 ○○구 ○○동 12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
1주의 금액	금액　　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주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대한민국 ○○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신문에 게재한다.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 ○○○ (　　–　　) ○○시 ○○구 ○○동 123 발기인 ○○○ (　　–　　) ○○시 ○○구 ○○동 1234 발기인 ○○○ (　　–　　) ○○시 ○○구 ○○동 1235
각 발기인의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발기인 ○○○는 △△주, ○○○는 △△주 기명식 보통주식을 각각 인수하였다.
주금납입일 년	년　　월　　일
주금 납입을 맡을 은행과 납입장소	△△은행 ○○○지점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 주

2. 주식의 발행가액

   1주의 금액 금 5,000원

3.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수와 금액

   해당사항 없음

년 월 일

발기인 ○○○

발기인 ○○○

발기인 ○○○

○○○ 주식회사 귀중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금액 : 금　　원정 (\　　)

위 금액은 귀 회사 설립시에 발행된 주식 △△주(1주의 금액 : 금　　원)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년　　월　　일 납입이 완료되어 현재 이를 보관 중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 발기인대표 귀하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아래에 기명날인한 본인들은 ○○○주식회사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위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창립총회를 상법 제363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단축하여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데에 동의하며 이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통지가 적법하게 주어진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 소 : ○○시 ○○구 ○○동 123

의 안 : 1. 창립사항보고의 건

2. 정관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298조에 정한 사항의 조사보고의 건

5.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년　　월　　일

주식인수인 ○○○

주식인수인 ○○○

주식인수인 ○○○

주식인수인 ○○○

창립사항보고서

본인들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본인들은 사업목적을

1)

2)

3)

4)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으로 정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 1주의 금액은 금 △△원, 자본금 △△△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2. 본인들은 ○○○씨를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회사설립까지의 필요한 사항에 있어 발기인을 대표하기로 정하였습니다.

3. 발기인 전원이 모여 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고 같은 년 월 일 공증인 변호사에게 인증받았습니다.

4. 발기인들은 년 월 일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 중 △주를 인수하고잔여주식 △주에 대하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의 모집에 착수하였습니다.

5. 위 모집에 앞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액면 1주의 금액을 금△△ 원으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년 월 일까지 ○○○씨가 주식 인수를 청약하여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 주의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6. 위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는 년 월 일 납입을 맡을 ○○은행 ○○지점에 동년 월 일까지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는 바, 동년 월 일 그 납입이 완료되었으며, 주금납입금은 회사의 위 명의로 ○○은행 ○○ 지점에 별단 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위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납입이 확인됩니다.

7. 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신청할 사유(「상법」 제290조에서 정한 사항)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아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8. 이상과 같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와 납입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사의 발기인들인 본인들은 하루속히 회사를 설립시키고자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발기인 ○○○

발기인 ○○○

발기인 ○○○

○○○ 주식회사 귀중

창립총회의사록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시
장 소 : ○○시 ○○구 ○○동 123
인수한 주식의 총수 : 주
주식인수인의 총수 : 명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총수 : 명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주식 : 주

발기인 대표 ○○○씨는 위와 같이 「상법」 제 309조에 정한 정족수가 출석하였으므로 이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임시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하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 일치로 발기인 대표 ○○○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동인은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의안의 심의를 구하였다.

제1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의 건

발기인 대표 ○○○씨는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지 창립사항보고서와 같이 창립총회까지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하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였다.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임시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 설명을 가한 후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에게 그 적합성과 채택여부를 물은 즉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였다.

제3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임시의장이 이사 2인, 감사 1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일 치로 다음 사람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출하였다.

이 사 : ○○○
이 사 : ○○○
감 사 : ○○○

위 사람 모두는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 이어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임시의장의 제의에 따라 전원일치로 이사 ○○○씨를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이에 ○○○씨는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였다.

제4호 의안 : 「상법」 제313조에 정한 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의장은 모든 이사와 감사가 「상법」 제313조에 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설명한 후 발기인이었던 이사나 감사는 그러한 조사에 참가하지 못함을 밝히고, 발기인이 아닌 이사 및 감사에게 「상법」 제313조에 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감사 ○○○씨가 별지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하였다.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전원 일치로 승인하였다.

제5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의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그 장소가 적당한지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의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할 것을 전원 일치로 승인하였다.

본 점 : ○○시 ○○구 ○○동 123

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시 ○○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였다.

서기 년 월 일

○○○ 주식회사

의장 이 사 : ○○○

이 사 : ○○○

이 사 : ○○○

이사회의사록

일 시 : 서기 년 월 일 오전 시 분

장 소 : ○○시 ○○구 ○○동 123 에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상법」 제390조제3항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 ○명

출석이사수 : ○명

감사 총수 : ○명

출석감사수 : ○ 명

이사 ○○○씨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다.

의 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요구한 바, 출석이사들은 신중한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사람을 선임하다.

대표이사 : ○○○

이상 회의의 목적인 의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년 월 일

○○○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 ○○○

이 사 : ○○○

감 사 : ○○○

조 사 보 고 서

본인들은 년 월 일에 개최된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서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는 바, 이에 「상법」 제 313조에 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1.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이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 1주의 금액은 금 △△원인 바 그 인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수 : △△ 주

서기 년 월 일 인수 완료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수 : △△ 주

서기 년 월 일 인수 완료

2. 인수 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 여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에 대하여 금 △△△원의 납입이 년 월 일 납입완료되었음을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 현물출자 및 기타 조사사항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신청할 사유(「상법」 제290조에서 정한 사항)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경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인 : ○○○

○○○ 주식회사 귀중

취 임 승 낙 서

아래 기명날인한 본인은 에 소재한 _____주식회사에 _____ 직으로 취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주 소 :

○○○ 주식회사 귀중

주 주 명 부

상 호 : ○○○주식회사

2017년 ○○월 ○○일 현재

주주명	소유주식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	10,000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8 주공아파트 ○○○@yahoo.co.kr
○○○	3,000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naver.com
○○○	7,00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hanmail.net

총주식수	1주당 금액	자본금
20,000주	금 5,000원	금 100,000,000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1

대표이사: ○○○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주 소 :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사람에게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

2.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등 등기관련서류의 공증행위 일체

3. 기타 위 등기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공증받은 이 서류는 _____부터 _____일까지 유효하다.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주 소 :

법인설립 전 확인사항

※ 법인설립을 위해 아래 사항을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1. 법인명 :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3. 주식회사 .....

2. 법인주소 :

3. 사업목적 : (상호검색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4. 설립자본금 :

5. 1주의 금액 : \ 원

6. 공고방법 : ○○신문

7. 결산기일 :

8. 이사, 감사, 대표이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9. 주식배당표 : (발기인, 주주의 주식보유수, %, 금액)

투자자 :	:	주	₩	%
투자자 :	:	주	₩	%
투자자 :	:	주	₩	%
투자자 :	:	주	₩	%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8. 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외국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국적
	③ 주소			(전화번호:)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등 발행기업)	④ 상호 또는 명칭	(국문)		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영문)		
	⑥ 주소	본사		(전화번호:)
		주공장(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금번 투자지역(신주 취득 및 출연의 경우)		(전화번호:)
	⑦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신고(신청) 접수기관 기재란)			
	⑧ 자본금 (출연금)	취득(출연)전 원		취득(출연)후 원
신고 (신청) 내용	⑨ 주식등양도자 (기존주식 취득시)	상호 또는 명칭(국문 또는 영문)		(전화번호:)
	⑩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총액:	원(USD 상당),	%
	⑪ 투자형태	[ ]법인([ ]신주, [ ]기존주) [ ]개인사업 [ ]비영리법인 출연	⑫ 투자목적	[ ]공장 설립・증설 [ ]사업장 설립・증설 [ ]인수합병(지분인수 등)
	⑬ 출자목적물 (출연대상)	[ ]현금, [ ]자본재, [ ]주식, [ ]부동산, [ ]채권, [ ]산업재산권 등	현금	원(USD 상당)
			자본재	원(USD 상당)
			기타	원(USD 상당)
	⑭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액(B)	1주(좌)당 취득가액(C)
		수량(A)	액면총액(A×B)	취득총액(A×C)
	⑮ 취득사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 [ ]무상증자, [ ]배당, [ ]매입・상속・유증・증여, [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 ]기타( )			
	⑯ 취득 후 해당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총액: 원(USD 상당)		%
		액면총액: 원		
	⑰ 금번 투자에 따른 예상 근로자 수	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8. 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일

<table>
<tr><td rowspan="2">외국투자가</td><td colspan="2">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td><td colspan="3"></td><td>② 국적</td></tr>
<tr><td>SPC여부</td><td>[ ]예 [ ]아니오</td><td>SPC의 최종 지배모기업</td><td colspan="2">상호 (국적:)</td></tr>
<tr><td rowspan="9">외국인 투자기업</td><td rowspan="3">③ 상호 또는 명칭</td><td colspan="3">(국문)</td><td rowspan="3">④ 사업자등록번호(본사)</td></tr>
<tr><td colspan="3">(영문)</td></tr>
<tr><td colspan="3">(*) SPC 여부 [ ] 예 [ ] 아니오</td></tr>
<tr><td>⑤ 주소</td><td colspan="5">본사 (전화번호: ,FAX:)
주공장(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대표 E-mail</td></tr>
<tr><td>⑥ 신고(허가)된 사업명</td><td colspan="5"></td></tr>
<tr><td>⑦ 자본금(출연금)</td><td colspan="5"></td></tr>
<tr><td>⑧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td><td colspan="3">취득총액: 원(*USD 상당)
액면총액:</td><td>%</td></tr>
<tr><td>⑨ 상시 근로자 수</td><td colspan="2">기존(변경등록) 명</td><td colspan="3">등록 후 예상규모(신규 및 변경등록) 명</td></tr>
<tr><td rowspan="4">외국인투자 기업 변경등록</td><td>⑩ 변경등록 내용(변경 등록의 경우)</td><td colspan="5">[ ] 외국인투자비율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 등이 변경되는 경우
[ ] 기 타
※ 변경내용</td></tr>
<tr><td rowspan="3">⑪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 (해당할 경우)</td><td>양도 또는 감소인</td><td colspan="2">상호 또는 명칭(영문)</td><td colspan="2">국적</td></tr>
<tr><td>양 수 인 (외국인의 경우)</td><td colspan="2">상호 또는 명칭(영문)</td><td colspan="2">국적</td></tr>
<tr><td>양도 또는 감소할 주식(지분)</td><td>종류</td><td>1주(좌)당 액면가액(B)</td><td colspan="2">1주(좌)당 양도 또는 감소가액(C)</td></tr>
<tr><td></td><td>수량(A)</td><td>액면총액(A×B)</td><td colspan="2">양도 또는 감소총액(A×C)</td></tr>
<tr><td></td><td>⑫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사유(해당할 경우)</td><td colspan="4">[ ] 외국인투자지분 전량 양도·감소, [ ] 피합병법인, [ ] 폐업·청산, [ ] 기타 ( )</td></tr>
</table>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수탁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 서식] 〈개정 2015.3.13〉 (앞 쪽)

접수번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5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총괄사업장소재지		총괄사업장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여부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천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영리 일반	영리 외투	비영리	국가 지방자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락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사업자 등록번호
				승인법인	기타						

조합법인 해당여부		공익법인				외국·외투법인	국적	투자비율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국법인 내용				
본점	상호	대표자	설치년월일	소재지

관리책임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4. 사업장현황

사업의 종류						사업(수익사업) 개시일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개별소비세		주류면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제조	판매	장소	유흥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	기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관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한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지점을 포함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KOTRA자료 25-007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법인설립가이드

발행일 2025년 1월

발행인 강경성

발행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자인/편집 (주)레드코뿔소커뮤니케이션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SSN 3058-8375

Copyright ©202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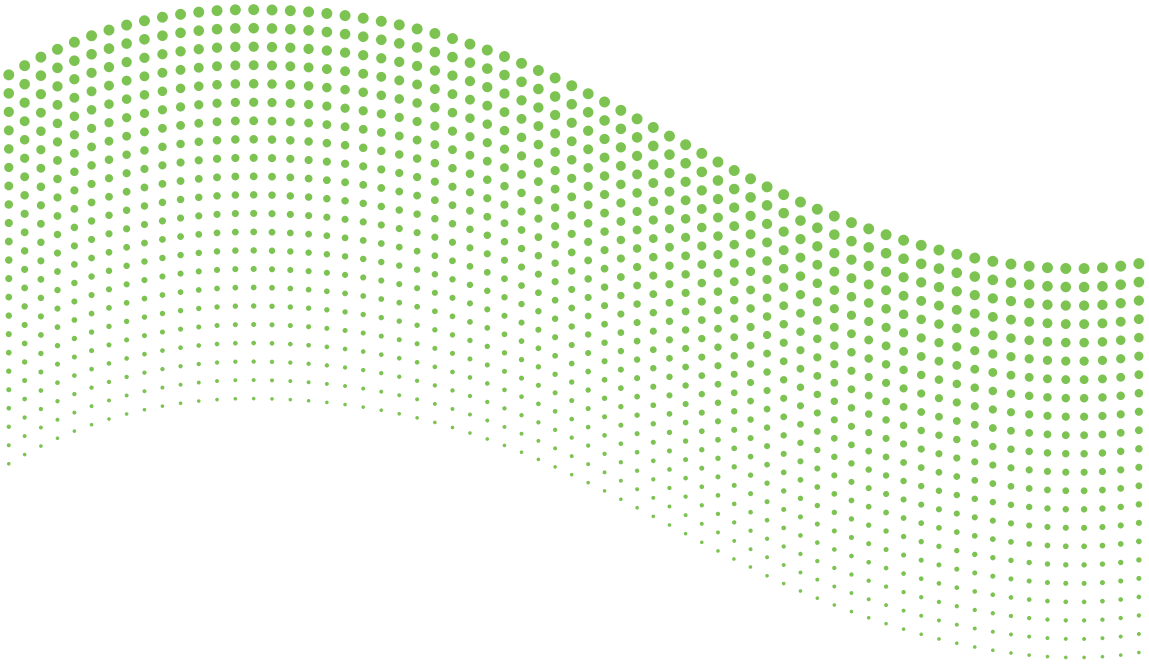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SSN 3058-8375